2024 『세법노트북(1쇄)』추록 및 정오표

2024 『세법노트북』(1쇄)의 추록 및 정오표를 올립니다. 세법 시행령이 당초 안과 비교하여 일부 수정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수정하고, 일부 오타를 수정하고자 합니다.

세법 노트북-부가가치세법 1쇄

페이지	수정전	수정후		
р9	(일반 - 건이) 20×1년 20×3년 20×3년 20×3년 20×3년 20×3년 20×3년 20×3년 20 전기 1/1 (기) 기 (기) 기 (기) 20 전기	(일반 - 간이) 20×1년 20×2년 20×3년 2		
p66	*1) 신용카드매출전표등(통신판매업자가 판매를 대행 또는 중개하는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통신사 업자로부터 전자적으로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 포함): 신용카드 매출전표, ~전자금융업자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개정	*1) 신용카드매출전표등 : 신용카드매출전표, ~전자금융업자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		
p78	③ 중소법인(제조업), 제1기(전기) 말~	 비중소법인(제조업), 제1기(전기) 말 		
p112	③ 둘 이상의 사업장이 ~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<u>8천만원</u> 이 상인 사업자. ~	③ 둘 이상의 사업장이 ~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<u>1억4백만원</u> 이 상인 사업자. ~		

세법 노트북-법인세법 1쇄

페이지	수정전	수정후		
р38	$\frac{2 - 1 \pm 1}{B}$ 대상 대상 존해배상금 $= A \times \frac{B-1}{B}$ $A: ①의 법률 또는 외국 법령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액 B: ①의 법률 또는 외국 법령에서 정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이 되는 배수$	$\frac{e - B - 1}{e}$ $\frac{E - 1}{B}$ A : ①의 법률 또는 외국 법령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액 B : ①의 법률 또는 외국 법령에서 정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이 되는 배수		
p130	연구·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 : (1)+[(2) 또는 (3)]	연구·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 : (1)+(2)+(3)		

세법 노트북-소득세법 1쇄

페이지	수정전				수정후		
	개인(사업소득)			개인(사업소득)			
р48	* 기준소득금역 입한 기부금 기준소득금액- 기준소득금액-	기준소득금액*-이월결손금 * 기준소득금액=차가감소득금액+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 기준소득금액-이월결손금-정치자금기부금 기준소득금액-이월결손금-정치자금기부금-고향사랑 기부금		* 기준소득금	기준소득금액*-이월결손금 * 기준소득금액=차가감소득금액+필요경비에 산 입한 기부금		
p49	주2) 개인		주2) 개인	주2) 개인			
	구분	지출액(B)		구분	지출액(B)		
	특례기부금	10(시プト)+3.9=13.9		정치자금ㆍ	10(2]7]) + 2 0 - 12 0		
	일반기부금	12		특례기부금	특례기부금 10(시가)+3.9=13.9		
	·		일반기부금	12			
p74	⑥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서화 · 골동품의 ~			⑥ 국가지정문:	⑥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서화 · 골동품의 ~		